#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02 발의연월일: 2025. 1. 2.

발 의 자:김성원·최은석·이종배

박충권 · 김선교 · 임이자

김소희 · 송석준 · 고동진

박성훈 • 이인선 • 김태호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공무원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음. 이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증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국가가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이등급은 중증 이상의 부상자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경미한 부상자라 할지라도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로인해 국가의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 상이등급 체계에서 8급 등급을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을 "8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으로,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를 "8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
면) ① ~ ③ (생 략)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4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	
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	
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	8급까지의 판정을 받
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	<u>은 사람 또는</u>
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	
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	
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	
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	
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u>7급까지의 판정을 받</u>	
<u>은 사람의</u> 경우에는 취득세 및	<u>은</u> 시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	
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	
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⑤ (생 략)

<u>8급까지의 판정을 받</u>
은 사람의
1.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